공정거래위원회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3.(월) 10:00 / 배포 2026. 11. 23.(월) 08:30
< 11. 23.(월) 참고 >

“은행 마음대로 서비스 변경·중단·제한” 막는다.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

- 1,550개 은행·저축은행 약관 중 1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-
- 여신전문금융, 금융투자 분야도 연내 순차적으로 시정요청 예정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(이하 ‘저축은행’)이 사용하는 **약관 1,550개를 심사**하여 이 중 **73개 불공정 조항**(17개 유형)이 **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**한다고 판단하여 **금융위원회**(이하 ‘금융위’)**에 시정을 요청**하였다.

* 2025년 제·개정된 은행약관 1,034개, 저축은행약관 516개 중 은행 65개(12개 유형), 저축은행 8개(5개 유형) 불공정 약관조항이 금번 시정요청 대상

공정위는 **매년** 은행·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**금융기관이 새롭게 제·개정한 금융거래 약관**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, **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**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**은행·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**하였다.

[불공정 약관 유형(17개 유형, 총 73개 조항)**]**

<은행>	
서비스 변경	①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·중단·제한 (9개 조항) ②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(8개 조항)
해지	③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 또는 추상적·포괄적인 해지 사유 (10개 조항) ④ 고객의 계약 해지권 또는 해지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 (3개 조항)
면책	⑤ 은행의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, 고객의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(9개 조항) ⑥ 은행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 (6개 조항) ⑦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면제 (3개 조항)
기타	⑧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별통지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(4개 조항) ⑨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 (2개 조항) ⑩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 (2개 조항)

	⑪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 (8개 조항) ⑫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(1개 조항)
<저축은행>	
서비스 변경	①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·중단·제한 (2개 조항) ②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(1개 조항)
해지	③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 또는 추상적·포괄적인 해지 사유 (1개 조항)
면책	④ 은행의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, 고객의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(1개 조항)
기타	⑤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별통지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(3개 조항)

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, **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·제한**할 수 있게 하여 **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**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다. 이 중에는 "**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**", "**모바일 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**", "**사업정책적 판단 하**"와 같이 **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·포괄적인 사유**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·중단·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[☞ 6면 참조].

* **에이(A) 은행 ○○○ 서비스 이용약관**

"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'서비스'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"

6. "**은행"의 제반 사정으로 "서비스"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**

* **비(B) 은행 ○○○ 서비스 이용약관**

"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10. 기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
* **씨(C) 은행 ○○○ 서비스 이용약관**

"은행은 기술적 사양변경이나 **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**."

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되었다. 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은 **상당한 사유없이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에도**, "**운영정책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**"되도록 하거나 부과 대상과 금액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"**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**"할 수 있도록 **포괄적으로 규정**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[☞ 7면 참조].

* **디(D) 은행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약관**
"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"

* **이(E) 은행 오픈뱅킹 이용약관**
"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"

한편,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**은행의 해지권은 넓히고, 고객의 해지권은 제한**하는 약관 조항들도 불공정하다고 보았다. 은행의 계약 해지사유 중 고객이 **"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"**와 같이 **추상적인 사유**를 포함한 조항은 **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부당**하다. 반면, **"영업점을 통한 서면 신청서의 제출"**을 통해서만 서비스 등의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은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까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**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**한다[☞ 8,9면 참조].

* **에프(F) 은행 대여금고 약관**
"①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4. 거래처가 은행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"

* **지(G) 은행 계좌내역 글로벌 통보 서비스**
"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 영업점을 통한 서면 신청서의 제출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"

그 밖에도 **계정 도용,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** 등 **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경우**에도 **일률적으로 은행의 책임을 면제**한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 또한 은행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**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배제**하는 등 **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**하는 약관조항도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하였다[☞ 10면 참조].

* **에이치(H) 은행 서비스 이용약관**
"관리자 이메일 계정, 비밀번호 관리 소홀,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"

* **아이(I) 은행 계좌개설 약관**
"어떤 경우에도 은행은 경제적 손실, 영업손실, 일실 이익, 수익, 영업권 및 예상 비용절감, 특별 손해, 자료 분실이나 훼손, 운영시간 손실, 계약 손실이나 기타 간접, 결과적, 표본적, 징벌적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손해, 손실, 비용이나 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"

이번 금융약관 심사는「은행법」 제52조 및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18조의3에 따라 **금융위원회가** 은행·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 또는 신고받은 **약관을 공정위에 통보**하고, **공정위가** 해당 약관의 **불공정성을 검토**하여 **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것**이며, 이후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 등에 대하여 **약관 변경 권고 및 명령** 등의 **후속 조치**를 실시하게 된다.

이에 따라 은행·저축은행을 이용하는 **소비자** 및 **중소기업** 등 **금융거래 고객**들이 **불공정 약관으로 입을** 수 있는 **피해**를 **예방**하고, 금융거래의 **공정성을 제고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**여신 전문 금융 및 금융투자업 분야**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**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**하는 한편, **금융업계**의 **불공정 약관 개선**을 위해 **금융당국**과 **지속적으로 협력*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공정위·금감원 공동으로 금융업계 대상 간담회·설명회 개최('24.3월, '25.3월, '26.4월)

[붙임] 2026년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시장감시국 약관심사과	책임자	과 장 김준희 (044-200-4528)
		담당자	사무관 김은집 (044-200-4532)
			실무수습 변호사 박해인 (044-200-45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2026년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**

1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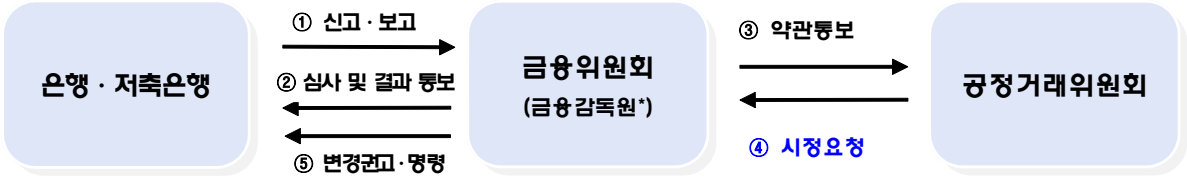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**은행 및 저축은행**이 사용하는 **약관 1,550개를 심사**하여 이 중 **73개 조항**(17개 유형)이 **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**한다고 판단하여 **금융위원회**(이하 '금융위')에 **시정을 요청**하였다.

○ **(은행 약관) 1,034개 약관**을 심사하여 **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·중단·제한** 조항, **일방적인 급부 내용 결정** 조항, **은행의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** 조항 등 **12개 유형 총 65개 약관조항**이 **불공정**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○ **(저축은행 약관) 516개 약관**을 심사하여 **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·포괄적으로 정한** 조항, **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**한 조항 등 **5개 유형 총 8개 약관조항**이 **불공정**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□ 공정위는 은행(1,034개)·저축은행(516개), 여신전문금융(1,150개) 및 금융투자(1,675개) 등 **총 4,375개 금융약관**을 **심사**하고 있으며, **심사가 완료**되는 **분야별**로 **즉시** 금융당국에 **시정 요청**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.

※ 금융위는 은행·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·보고 받은 제·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,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(은행법 제52조,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)



* 금융위는 은행·저축은행 약관의 보고 접수·신고 수리, 통보, 변경권고·명령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(은행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,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)

2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

1.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·중단·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(은행 9개 조항, 저축은행 2개 조항)

가. 약관 조항 (예시)

【○○ 서비스 이용약관(은행)】
제12조(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)
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'서비스'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"
6. "은행"의 제반 사정으로 "서비스"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
【우대금리 맞춤 급여이체 서비스 이용약관(저축은행)】
제5조(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 등)
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지 이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.
6. 관련 법령의 개·제정, 기타 회사의 기술적, 운영적, 경영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고객의 **서비스 이용을 변경·중단·제한**하기 위해서는 '상당한 이유'가 있어야 하며, **그 사유가 추상적·포괄적**이어서 고객이 쉽게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.

□ 그러나 위 약관 조항들은 "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", "기타 회사의 기술적, 운영적, 경영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" 등의 **추상적·포괄적**인 사유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**서비스를 변경·중단·제한**할 우려가 있는 바, '상당한 이유없이 **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**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**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**할 수 있게 하는 조항' 에 해당한다(약관법 제10조 제1호·제2호).

2.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
(은행 8개 조항, 저축은행 1개 조항)

가. 약관 조항 (예시)

【통합자산관리서비스(은행)】
제1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④ "은행"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위하여,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【○○ 뱅크 오픈뱅킹 이용약관(은행)】
제18조(수수료)
① 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**급부**는 **계약**의 **핵심적인 내용**이므로 **상당한 이유없이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되며**, 급부에는 수량, 이행시기, 급부제공의 방법 및 대가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.

□ 그러나 위 약관 조항들은 **"운영정책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"**되도록 하여 **은행이 운영정책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**할 수 있도록 하거나, **"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"고 포괄적**으로 규정하여 **수수료에 관한 사항**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**은행이 임의로 변경**할 수 있도록 하므로 '상당한 이유 없이' **급부의 내용**을 사업자가 **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**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'에 해당한다(약관법 제10조 제1호).

3.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 ·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
(은행 10개 조항, 저축은행 1개 조항)

가. 약관 조항 (예시)

【대여금고약관(은행)】
제12조(거래해지사유)
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4. 임차인이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
【○○○ 간편인증기반서비스(저축은행)】
제8조("서비스" 해지 및 이용제한)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저축은행"은 "고객"의 "서비스"가입을 해지하거나 "서비스"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"고객"이 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
2. "고객"이 관련법령,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, "저축은행"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**계약의 해제·해지**는 비록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것이어서 **계약의 존속에 영향**을 줄 정도가 아니면 제한되어야 하고, 그 사유 또한 **구체적으로 열거**되어야 할 것이다.

□ 그러나 위 약관조항들은 "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", "저축은행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" 등 **계약해지 사유**를 **추상적·포괄적**으로 정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바, '사업자에게 **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**을 부여하여 **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**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'에 해당한다(약관법 제9조 제2호).

4. 고객의 계약 해지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
〔은행 3개 조항〕

가. 약관 조항 〔예시〕

【○○장병내일준비적금(은행)】
제10조(제한사항)
② 이 적금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

[계좌내역 글로벌 통보 서비스(은행)]
제6조(서비스의 해지 및 종료)
"이용자"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 영업점을 통한 서면 신청서의 제출로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고객의 의사표시에 **부당하게 엄격한 형식이나 요건을 요구**하는 것은 **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**할 수 있으므로 법률·관습에 의하여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거나 해당 방식을 요구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.

□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신규 개설은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**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**하도록 제한하여 **합리적 이유 없이 서비스의 해지 방법**을 **제한**하는 것이므로 '**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**에 대하여 **부당하게 엄격한 제한**을 가하는 조항' 및 '**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** 조항'에 해당한다(약관법 제12조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).

5.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
〔은행 9개 조항, 저축은행 1개 조항〕

가. 약관 조항 〔예시〕

【○○ 서비스(은행)】
제16조(관리자 이메일 계정,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)
④ 관리자 이메일 계정, 비밀번호 관리 소홀,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【○○ 은행 계좌개설 계약서(은행)】
제15조(회사의 의무)
6.4 어떤 경우에도 은행은 경제적 손실, 영업손실, 일실 이익, 수익, 영업권 및 예상 비용 절감, 특별 손해, 자료 분실이나 훼손, 운영시간 손실, 계약 손실이나 기타 간접, 결과적, 표본적, 징벌적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손해, 손실 비용이나 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사업자의 **고의 또는 과실**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가 **손해배상책임**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다(민법 제750조). 또한 **손해배상의 범위**는 기본적으로 **통상손해**를 그 한도로 하나, 사업자가 **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**에는 **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**을 질 수 있다(민법 제763조, 제393조 제2항).

□ 그러나 위 약관 조항들은 은행 등의 **보안·전산시스템 관리상 귀책사유**로 인해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**손해배상책임을 배제**하고 있어 '사업자의 **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**로 인한 **법률상의 책임을 배제**하는 조항'에 해당하고(약관법 제7조 제1호), 은행 등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불문하고 "어떤 경우에도" 특별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**상당한이유 없이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**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(약관법 제7조 제2호).

6.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
〔은행 4개 조항, 저축은행 3개 조항〕

가. 약관 조항 〔예시〕

【○○ 포인트 약관(은행)】
제4조(포인트 이용 제한)
②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서비스는 은행의 영업 정책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이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제휴사 등의 갑작스러운 사업종료 등 제휴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은 「○○카드」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【자동계좌이체약관(저축은행)】
제4조(신청, 변경 및 해지)
④ 이체자금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

나. 시정 요청 사유

□ 서비스 변경·중단 등 고객의 권리·의무에 **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**은 고객에게 **개별적으로 통지**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.

□ 그러나 위 약관 조항들은 “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확인하여야 하며”, “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” 등으로 정하여 개별 사후 통지 규정을 두지 않거나 통지 의무를 고객의 확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 ‘**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**한 조항’에 해당한다 (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).

7. 기타 불공정 약관 유형

① **은행의 본점 소재지**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**관할법원**으로 정한 조항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** 은행의 본점 소재지 외에 거주하는 **고객의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**을 초래할 수 있음

② **채무자 측 흠결**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도 **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**하도록 한 조항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 보증인이** 주채무의 무효·불성립 등 **항변**을 **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**가 있음

③ **이중양도나 (가)압류가 있어도** 고객이 은행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 이중지급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**할 우려가 있음

④ **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** 정한 조항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** 은행의 **일방적 판단**으로 고객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

⑤ **명의 위·변조 도용** 등의 사실을 **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**을 지도록 한 조항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** 은행의 **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까지 부당하게 제한**할 우려가 있음

⑥ **법령상 융자가 제한**되면 그로 인한 **일체의 불이익**에 대해 **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**

⇒ **(시정 요청 사유) 고객의 이의제기권이 과도하게 제한**됨

3 의의 및 향후 계획

□ 이번 시정 요청으로 국민들의 **소비** 및 **경제 활동**과 밀접하게 관련된 **은행·저축은행**의 책임이 강화되고, **불공정**한 **금융거래 약관**으로 인한 **소비자** 및 **기업고객**들의 **피해 예방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하여 **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**를 거치고 있어 **불공정 약관**이 보다 **효과적으로 시정**되고, 금융업계 대상 **간담회·설명회** 등을 통해 **주요 시정사례**를 **공유**함으로써 **동일·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예방**하는 데에도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공정위는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에 이어, **여신전문금융**, **금융투자** 분야 **약관**도 **신속하게 심사**하여 **심사가 완료**되는 **즉시 금융당국**에 **불공정 약관 조항**의 **시정을 요청**할 계획이다.